

# 슬기로운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 안내



경기복지거버넌스



# 슬기로운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 안내



경기복지거버넌스

## CONTENTS

<b>I. 경기복지거버넌스 알아보기</b> .....	<b>03</b>
1. 경기복지거버넌스란?	
2. 설립목적	
3. 주요활동	
4. 주요연혁	
5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체계	
<b>II. 경기복지거버넌스 돌아보기</b> .....	<b>06</b>
1. 경기복지거버넌스 주요활동	
2. 경기복지거버넌스 추진의제 및 주요성과	
<b>III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살펴보기</b> .....	<b>11</b>
1. 위원 구성	
2.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	
3. 기타사항	
4. 회의운영 안내(운영 절차)	
<b>IV. 참고자료(관련 조례 및 규정)</b> .....	<b>13</b>
1.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	
2.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규정	
3.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분야별 정책비전	

# I. 경기복지거버넌스 알아보기

## 1. 경기복지거버넌스란?

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·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도 및 도의회 사회복지분야 전문가,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·합의하는 기구

### ※ 운영근거

- 「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- 「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규정」

## 2. 설립목적

- 현장과 도정과의 소통 시스템 마련 및 협업을 통한 신뢰 구축
- 민·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적 실행 및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

## 3. 주요활동

-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발굴·심의·연계·건의·자문
- 경기도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링
- 사회복지 정책 연구·조사, 포럼, 사업 등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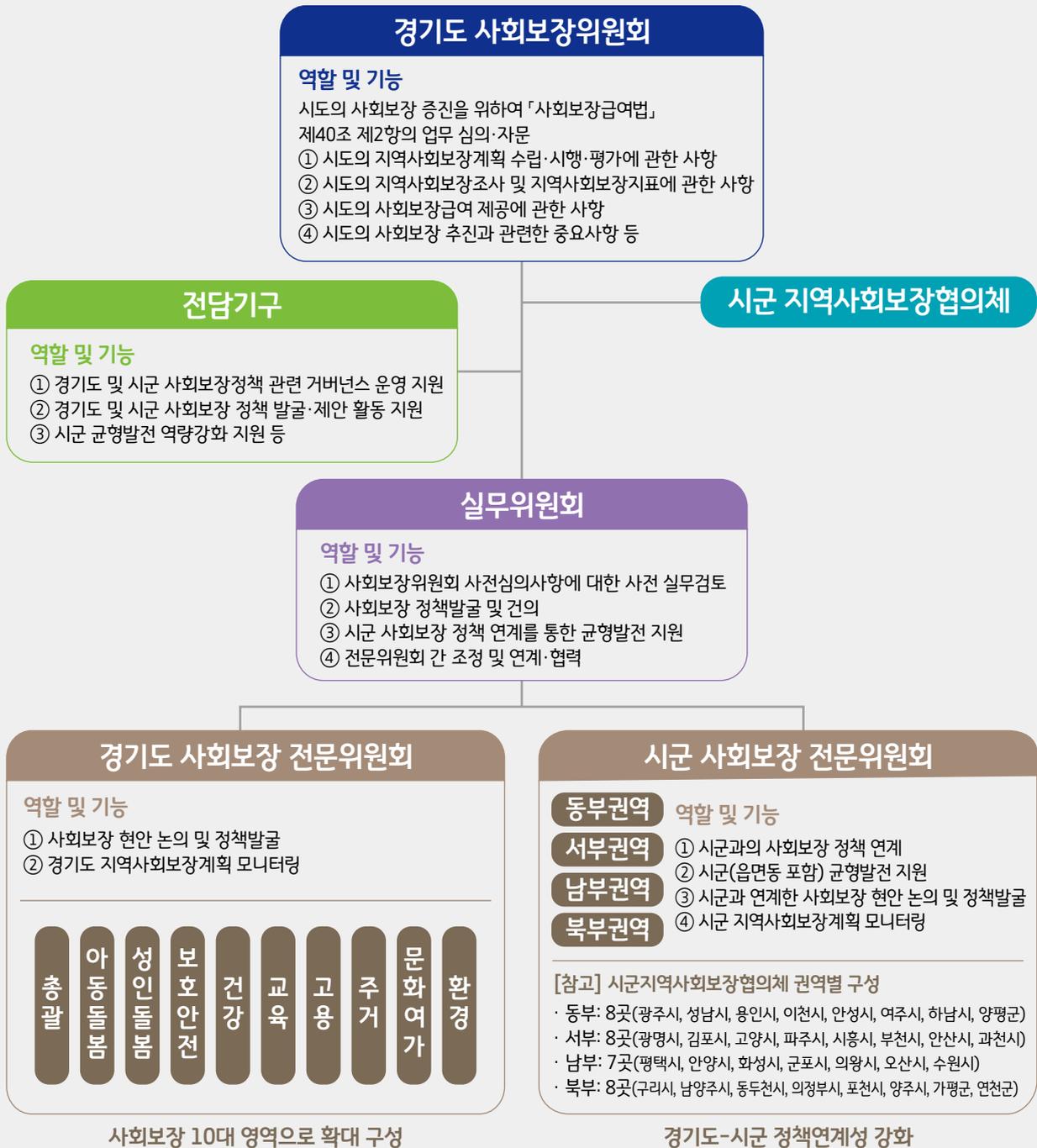
## 4. 주요연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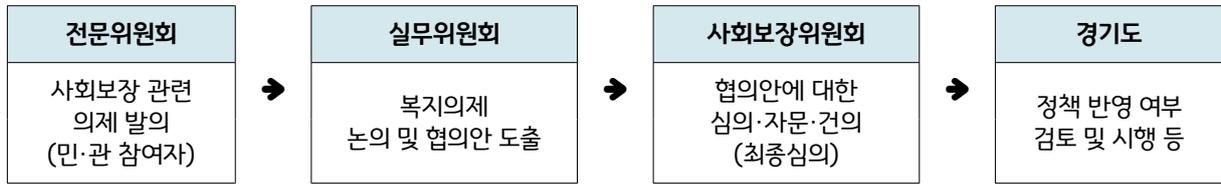
## 5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체계

### ○ 구성방향

-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
- 사회보장 10대 영역으로 확대
- 시군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신설(시군과의 정책연계성 강화)



※ 정책의제 반영 경로



※ 경기도 사회보장전문위원회 위원 구성(안)

분야	위원 구성(안)	
총괄 (삶의질 및 지역인프라)	· 지역복지 관련 기관·단체 · 기초생활보장 관련 ·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관련	· 사회복지협의회, 사회복지사협회 등 · 기타 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관련
아동돌봄	· 보육 관련(육아종합정보센터 포함) · 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관련 · (발달)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	· 다문화아동 및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등 · 기타 아동돌봄 관련
성인돌봄	· 장애인 보호 및 자립 관련 · 노인요양 및 보호, 미혼모여성 보호 관련	· 저소득층 자활 관련 · 기타 성인돌봄 관련
보호안전	· 성폭력, 가정폭력 관련 · 아동 및 노인 학대, 예방활동 관련 · 안전사고 및 자살예방 관련	·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관련 · 기타 보호안전 관련
건강	· 보건·의료 관련 ·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	· 생활체육 관련(장애인 재활 포함) · 기타 건강 관련
교육	· 장애인, 저소득 등 취약계층 교육 관련 · 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및 지역사회교육활동 관련 · 평생교육 관련	· 의무교육 및 급식 등 학교 교육 관련 · 기타 교육 관련
고용	· 장애인, 노인 일자리 관련 ·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·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관련	· 사회적경제(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) 관련 · 기타 고용 관련
주거	· 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	· 기타 주거 관련
문화여가	·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· 사회교육,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관련	· 주민센터 및 작은도서관 관련 · 기타 문화여가 관련
환경	· 환경교육 및 보호활동 관련 · 쓰레기 등 생활환경 및 에너지 관련 · 공원 및 도시디자인 관련	· 복지계층의 편의증진 관련 · 기타 환경 관련

## II. 경기복지거버넌스 돌아보기

### 1. 경기복지거버넌스 주요활동



#### 경기복지거버넌스 준비

- 2015.11.05. 경기복지거버넌스 조례 제정 토론회
- 2015.12.31. 「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
- 2016.01.~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 추진단 운영

#### 제1기 (2016. 4. 14. ~ 2018. 4. 13.)

- 2016.04.14. 제1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 및 운영
- 2017.07.12. 경기복지거버넌스 1주년 기념포럼 “경기복지거버넌스 미래와 전망”
- 2017.12.11. 제1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회



#### 제2기 (2018. 4. 14. ~ 2020. 4. 13.)

- 2018.04.14.~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 및 운영
- 2018.11.21.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
- 2019.05.07.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설치·현판식
- 2019.12.12.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



#### 제3기 (2020. 4. 14. ~ 2022. 7. 31.)

- 2020.04.14.~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 및 운영
- 2022.05.19.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정책발표회

#### 제4기 (2022. 8. 29. ~ 2024. 7. 31.)

- 2022.08.~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개편
- 2022.08.29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
- 2022.10.24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

1기			
시기	행사명	내용	
2017	7. 12.	경기복지거버넌스 1주년 기념 포럼	· 경기복지거버넌스 미래와 전망 도출
	9~10.	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수렴 간담회	· 단일임금체계(안) 의견수렴
	11. 20.	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수렴 민관워크숍	· 단일임금체계(안) 토론
	12. 11.	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회	·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
2018	3. 7.	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보장 실무회의 포럼 (제1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)	·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협력방안 모색 (추진경과, 사례발표, MOU)
	3. 9.	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 실무회의 포럼 (제2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)	· 재혼가정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복지거버넌스 포럼

2기			
연도	날짜	행사명	내용
2018	11. 21.	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	·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향 공유
	12. 4.	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과정 평가를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토론회	·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진행상황 공유 및 평가
2019	11. 28.	제3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주거취약계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
	12. 6.	제4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경기도 취약계층 생산물품 및 서비스 상호거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
	12. 6.	제5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경기도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
	12. 12.	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	· 우수위원 표창, 실무회의별 추진현황 발표, 제3기 개편(안) 공유 등

### 3기

연도	날짜	행사명	내용
2020	10. 16.	제6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거버넌스의 과제
	10. 17.	제7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포스트코로나 시대,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. -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방안 -
	10. 17.	제8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! 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 운영방안 -
	10. 17.	제9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?
	11. 24.	제10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감염병 뉴노멀 시대,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과 과제 - 「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중심으로 -
	11. 30.	2020년 경기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	· 경기도 인적안전망 홍보영상 ·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이웃 발굴·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· 토크콘서트, 시상식, 이벤트 등
	12. 24.	2020년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	· 우수위원 표창, 경기복지거버넌스 활동내용 공유
2021	4. 6.	제11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원주택 운영방안
	10. 1.	제12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다양성, 포용, 변화 :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한다. - 한국의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- - 경기도 가족정책의 방향(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) -
	10. 1.	제13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'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' 도민토론 -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-
	10. 1.	제14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'경기도의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?' 현황 및 방향 진단
	10. 1.	제15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외국인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'이웃'입니다. -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마련 -
	10. 2.	제16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친족성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도민토론 - 친족성폭력 피해 현황 - - 친족성폭력 피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성 -
	10. 29.	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	· 위기이웃 발굴·지원 우수사례 시상 · 경기도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포럼
	12. 15.	2021년 경기복지거버넌스 결과보고회	· 우수위원 표창, 경기복지거버넌스 활동내용 공유
	12. 17.	제17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	· 복지와 ESG의 만남, 복지혁신의 길 - 왜 복지에 ESG를 도입해야하나? -
2022	3. 29.	제18차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 (2022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)	·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행정조직 강화 방안
	5. 19.	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정책 발표회	·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에 바라는 10대 정책 제안

## 2. 경기복지거버넌스 추진의제 및 주요성과

### ※ 제1기 경기복지거버넌스(2016. 4. 14.~2018. 4. 13.)

- 주요특징 : 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현안 논의 및 정책발굴, ②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노력
- 정책성과 : ①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전담기구 설치, ② 비정규직 차별 없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마련

1기 (2016. 4. ~ 2018. 4.)			
실무회의	정책 및 사업제안	추진여부	내용
처우개선	·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확대 제안	정책반영	-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확대
장애인 복지	·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체계 마련 제안	정책반영	- 누림센터 내 발달장애인자립지원 전담팀 신설 -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
여성가족	· 여성가족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	정책반영	- 경기도 처우개선 계획 중 여성가족 관련 시설 종사자 포함
생활보장	· 복지사각지대발굴 연계체계 구축 제안	사업반영	-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관 MOU추진
노인복지	· 선배시민 교육 제안	사업반영	- 사회복지기관 내 선배시민교육 추진
사회공헌	· 경기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제안	사업반영	- 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 추진
아동 청소년	· '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만들기' 조례 제안	담당부서 제안	-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중

### ※ 제2기 경기복지거버넌스(2018. 4. 14.~2020. 4. 13.)

- 주요특징 : ① 사각지대 발굴·지원 위한 정책 제안, ② 정책제안 경로 확대(경기도 주민참여예산, 경기도민 정책축제 등)
- 정책성과 : ①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, ② 읍면동협의회 전담인력 배치, ③ 정책제안 활동 강화(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(2건)·우수 토론의제 선정, 주거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조례 제정 제안,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)

2기 (2018. 4. ~ 2020. 4.)			
실무회의	의제	추진여부	내용
시군협력	· 시군 및 읍면동협의회체 활성화 지원	정책반영	- 읍면동협의회체 활성화 지원 담당자 배치 (시군협의회체별 1인) - 시군협의회체 지원을 위한 광역사무국 설치 논의 중
여성가족	·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	사업반영	- 1인가구 여성안전서비스 매뉴얼 제작
사회적 일자리	· 경기도 취약계층 생상품 및 서비스 상호거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	정책반영	- 제1회 경기도민 정책대회 토론주제 선정, 정책 제안 ('20년 경기도 사업 추진) - 사회적일자리 통합안내지 제작
아동 청소년	· 청소년자유공간마련을 위한 정책제안	정책반영	- 제1회 경기도민 정책대회 토론주제 선정, 정책 제안 -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, 2021년 신규사업 추진
장애인 복지	·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 제안	담당부서 제안	- 영유아조기개입서비스 및 가족지원체계 구축 등 10개 사업 제안, 경기도 해당부서 의견 수렴
노인복지	· 경기도노인복지 연결망모델 개발	'20년 의제연계	- 노인복지 민간자원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중
생활보장	· 경기도형 생활보장 기준 마련 ·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	조례개정 (안) 발의	- 주거취약계층 지역사회정착 지원 포럼 추진
사회공헌	· 경기도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	정책반영	- 경기도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 제안 및 관련 부서 논의 중 -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반영검토
처우개선	· 처우개선 계획 수립	정책반영	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

※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(2020. 4. 14.~2022. 7. 31.)

- 주요특징 : ① 31개 시군 거버넌스 참여 확대, ② 분야별 조례 제·개정 본격적 추진
- 정책성과 : ① 사회복지장 관련 조례 제·개정 6건(「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, 「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 등), ②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선정(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10건), ③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(9건)·우수 토론의제 선정, ④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G방역 매뉴얼 개발·보급

3기 (2020. 4. ~ 2022. 7.)			
회의	의제	추진여부	추진 내용(추진성과)
실무협의회	· 경기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	공약반영	- (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광역사무국 설치제안(민선 8기 공약반영)
실무회의	지역 복지	조례개정 / 공약반영 / 사업반영	- 「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- (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「경기도의 좋은 돌봄 역량은 어디까지? 현황 및 진단」 선정 및 토론 - (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경기도 느린학습자(경계성지능인)지원사업 제안 및 선정 - 경기도 감염병 조례 정책 토론회 추진 - 경기도 G방역+ 운영 매뉴얼 2종 제작(총괄편, 복지관편) - 경기복지거버넌스 정책발표회 :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광역사무국 설치,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제안(민선 8기 공약반영)
	복지 지원	조례 제·개정	- 「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개정(안)」 제안 - 「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」 제정 - (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 정책제안 및 선정 - (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경기도 사회복지기관 ESG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제안 및 선정 - 「경기도 사회공헌활성화지원단 운영」 모니터링
	노인	사업반영	- (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노인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제안 및 선정 - 경기도 G방역+ 운영 매뉴얼 3종 제작(노인복지관편, 재가복지편,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편) - 사회복지 현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 운영
	장애인	사업반영 / 조례제정	- 「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- (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경기도장애인콜택시 통합운영 방안 제안 - 경기도 G방역+ 운영 매뉴얼 5종 제작 - 「표준화된 사례관리 민·관 자료사정 척도 개발 및 보급」 2022년 경기복지재단 우수사업 선정
	여성 가족	사업반영	- (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경기도 조부모육아지원금 지급방안 제안 - (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「다양성, 포용, 변화 -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한다」 선정 및 토론, 「친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마련」 선정 및 토론 - (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제안 및 선정 -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추진

3기 (2020. 4. ~ 2022. 7.)

회의		의제	추진여부	추진 내용(추진성과)
실무 회의	아동	·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	조례 제·개정 / 사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정</li> <li>- 「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</li> <li>- 「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</li> <li>- 「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」(추진 중)</li> <li>- 「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(추진 중)</li> <li>- 「이주배경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」(추진 중)</li> <li>- (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‘아동 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 토론회’ 선정 및 토론</li> <li>- (2022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자립준비청년 심리지원사업 제안 및 선정</li> <li>- 경기도아동권리보장원 모델 연구 제안</li> </ul>
	청소년	·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	사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청소년 기본 조례」 제정(추진 중)</li> <li>- (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제안</li> <li>- (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정책제안 및 선정</li> <li>- (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청소년들의 전용공간 청소년카페 지원 사업 정책제안 및 선정</li> <li>- (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위기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정책제안 및 선정</li> <li>- 경기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(추진 중)</li> <li>- 경기도 청소년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(추진 중)</li> </ul>
	외국인 주민	· 외국인 주민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	정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)‘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마련’ 선정 및 토론</li> <li>- (2021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)언어다양성 통합 구축 정책제안 및 선정</li> <li>- 외국인 주민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경력 80% 인정</li> </ul>
	사회적 일자리	·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방안 마련	사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기도 G방역+ 운영 매뉴얼 1종 제작</li> <li>- 사회적경제 생산품·서비스 상호거래 우수시설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(‘20~’21)</li> </ul>
협의체 네트워크	임원 회의	·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	사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기이웃발굴 및 코로나19 피해지원가구 12억원 지원</li> </ul>
	사무국 회의	·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· 시군협의체 활성화	사업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군 위기이웃발굴 사례 우수사례 제작</li> <li>-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 개발</li> <li>- 시군협의체 직무분석 추진</li> <li>-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캘린더 제작 및 보급</li> <li>-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무분석 및 업무매뉴얼 제작</li> <li>-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성과분석 연구</li> </ul>

### III.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살펴보기

#### 1. 위원 구성

- 위원 구성 규모 : 310명
  - 실무위원회 : 공공 및 민간위원 30명(당연직 24명, 민간추천 6명)
  - 산하기구
    -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: 공공 및 민간위원 200명(각 회의별 20명)
    - 시군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: 공공 및 민간위원 80명(각 회의별 20명)
  
- 구성 방법
  - 민간위원 : 공개모집(필요 시 추천)
    - 경기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등 협의회, 도단위 단체, 공공기관,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위원 추천 요청
    -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통한 위원 선정(간여석의 경우, 의제 선정결과에 따라 추가모집)
  - 공공위원 : 사회보장 영역별 담당부서 과장 또는 팀장 참여
  
- 위원 임기 : 위촉일 ~ 2024. 7. 31.(약 2년 간)

#### 2.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

위원회 구성	위원회별 주요 활동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무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회보장위원회 사전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</li> <li>② 사회보장 정책발굴 및 건의</li> <li>③ 시군 사회보장 정책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지원</li> <li>④ 전문위원회 간 조정 및 연계·협력</li> </ol> </li>   <li>- 산하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회보장 현안 논의 및 정책발굴</li> <li>② 경기도지역사회 보장계획 모니터링</li> </ol> </li> <li>· 시군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시군과의 사회보장 정책 연계</li> <li>② 시군(읍면동포함) 균형발전 지원</li> <li>③ 시군과 연계한 사회보장 현안 논의 및 정책발굴</li> <li>④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
임원 구성	임원 역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무위원회 : 회장 2명(공공 1명, 민간 1명), 부회장 1명(민간 1명)</li> <li>- 산하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도 전문위원회 각 회의별 회장 2명(공공 1명, 민간 1명), 부회장 1명(민간 1명), 총무 1명(민간 1명)</li> <li>· 시군 전문위원회 각 회의별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규정 제3조 ⑤당연직 위원 중 담당 과장을 공회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 중 민간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호선에서 정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장 : 위원회 총괄, 회의 개최·운영</li> <li>- 부회장 : 회의 개최 요청, 회의 참석자 확인</li> <li>- 총무 : 회의록 작성</li> </ul>

### 3. 기타사항

- 위원 모집 : 위원 정원의 30%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(공개모집, 추천 등)
- 위원 사임 및 해촉
  - 사임 : 사임희망 시, 사임신청서(별도 서식) 작성,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전자우편(bokji@ggwf.or.kr) 제출
  - 해촉
    - 가. 해촉 사유 :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-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  - ③ 직무태만(연속 3회 결석 등)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-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- 나. 해촉 절차 : ① 해촉사유 발생 시 위원 안내(2주 전 지원단→해당위원)
  - ② 사유 확인 및 소명서 제출(해촉 3일 전까지 해당위원→지원단)
  - ③ 자료확인 및 해촉여부 결정·안내(해촉일 전 지원단→해당위원)

### 4. 회의운영 안내(운영 절차)

가. 회장, 부회장, 총무 선정

나. 정기회의일 지정

예)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(총괄 분야) → 짝수달 ○째 주 ○요일 10:00 회의 지정

시군 사회보장 전문위원회(동부권역) → 홀수달 ○째 주 ○요일 14:00 회의 지정

다. 회의운영

내용	담당	시기
<b>① 회의소집</b> - 공공위원 참석여부 확인 - 위원회 중 2/3이상 참석 가능여부 확인 (2/3이상 미참석 시, 회의일 조정)	회장/부회장	회의 3~4주 전
↓		
<b>② 회의개최 요청</b> - 지원단에 회의개최 요청서(별도 서식) 전자우편 제출(개최일시, 회의안건, 참석현황 등) - 불참 위원 대상 사전불참 안내서 접수	회장/부회장	회의 3주 전
↓		
<b>③ 회의준비 및 참석안내</b> - 회의계획 수립 및 참석요청 공문 발송 - 회의자료 제작 및 공유 - 회의 준비(회의실, 다과 등)	지원단 (담당자)	회의 2주 전 ~ 회의 전날
↓		
<b>④ 회의</b> - 회의 진행 - 출석확인(정족수) - 출석 확인서 취합 및 제출 - 회의 기록	회장 부회장 총무	당일
↓		
<b>⑤ 후속조치</b> - 회의록 제출 - 결과보고 및 회의록 공유 - 수당 등 각종 지출처리	총무 지원단	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

## IV. 참고자료(관련 조례 및 규정)

### 1. 「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[제정] 2015-12-31 조례 제 5098호

[일부개정] 2016-12-16 조례 제 5426호 (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
[일부개정] 2019-01-14 조례 제 6043호 (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
[일부개정] 2019-07-01 조례 제 6235호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0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
6. 삭제 <2019.1.14.>
7. 삭제 <2016.12.16.>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
9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10. 시·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11.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, 여성가족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9.07.01.>

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
2.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
3.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
4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
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6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
7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- 제4조(심의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제2조 중 6호에서 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한다.
1.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
    - 가. 삭제 <2019.1.14.>
    - 나. 제2조제9호에 따른 의료급여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
  2.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
    - 가.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·추진
    - 나. 삭제 <2019.1.14.>
  3. 삭제 <2019.1.14.>
  4.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
    - 가. 「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사항
- ④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위원회 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1.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: 11명 이내
  2.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: 11명 이내
  3. 장애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: 11명 이내
  4.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: 11명 이내
-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거나,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된다.
-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며, 회의운영 및 간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, 제9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- 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7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심의회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
-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·관리와 관련한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.
  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  -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**제9조(간사)** 위원회와 각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실·과장이 된다.

- 제10조(실무협의회)**
-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실무협의회는 그 산하에 실무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- 제11조(전담기구의 지정 등)**
- ①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
    2.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연계, 조정, 의견수렴 및 전파
    3. 실무협의회 주관 공청회, 포럼, 간담회 등 개최 지원
    4.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12조(실비보상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,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「경기도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**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 <2015.12.3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는 폐지한다.

- 제3조(경과조치)**
- ① 이 조례 시행 전에「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복지위원으로 본다.
  - ② 이 조례 시행 전에「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분과심의위원회로 본다.

-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3항 중 “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”를 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“사회공헌분과위원회”를 “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- ② 「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 중 “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”를 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“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”로 한다.
- ③ 「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1항 중 “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”로 “노인복지분과위원회”를 “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**부칙 (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 <제5426호, 2016.12.16.>**

- 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.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“「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”을 “「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 제4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“제3조제2호에서”를 “제3조제3호에서”로 한다.

**부칙 <2019.1.14.>**

- 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.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**부칙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<제6235호, 2019.7.1.>**

- 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)** 생략
-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항 부터 ⑳항 생략
- ㉑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보건복지국장, 여성가족국장, 복지여성실장”을 “복지국장, 여성가족국장”으로 한다.
- ㉒항 부터 ㉔항 생략

## 2.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규정

[제정] 2019.12.31.

[개정] 2022.08.04.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제·개정)** 이 규정의 제·개정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정한다.

### 제2장 실무위원회

- 제3조(실무위원회 구성)**
- ① 실무위원회는 산하 실무 회의기구(이하 “산하 기구”라 한다)로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(이하 “경기도 전문위원회”라 한다)와 시군 사회보장 전문위원회(이하 “시군 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장은 회장으로 표기한다.
  - ② 실무위원회는 산하 기구의 회장과 외부 추천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중 담당 과장을 공공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 중 민간회장을 호선하여 정한다.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외부 추천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등 협의기구, 도단위 단체, 공공기관,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.
  - ③ 산하 기구 중 경기도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제 분야로 구성하고, 시군 전문위원회는 시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구성한다. 다만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하 기구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④ 산하 기구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, 필요시 실무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공위원은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 안전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팀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1.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
    2. 민간의 법인·단체·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(직능단체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, 시·군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장)
    3. 사회보장 관련 도단위 단체, 공공기관, 협의기구에서 추천하는 자
    4.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
    5. 경기도 사회보장 영역 업무담당 과장 또는 팀장
  - ⑤ 당연직 위원 중 담당 과장을 공공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 중 민간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호선하여 정한다.

- 제4조(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 회장의 직무)**
- ① 실무위원회 회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산하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산하 기구의 회장은 추진사항을 실무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- 제5조(위원의 임기 등)** ① 공공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회 및 경기도 전문위원회의 결원된 민간위원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부 추천을 통해 참석 위원 2/3 이상의 동의하에 결정하며, 시군 전문위원회의 결원된 위원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한다.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민간위원의 직위 승계)** 민간위원은 제3조 제2항 및 제3항, 제4항에 따라 추천·위촉되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(이직, 사임 등) 직위에 임용된 자가 위원으로 승계 될 수 있다. 다만, 임용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.

- 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① 도지사는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3. 직무태만(연속 3회 결석 등)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제3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회 의

**제8조(회의 구성)**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회의, 경기도 전문위원회 회의, 시군 전문위원회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로 구분하고 각 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9조(회의 운영)**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, 경기도 전문위원회 정기회의는 분야별 격월 1회 이상 개최하며, 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회의를 요청하거나 재적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- ③ 시군 전문위원회는 권역별 회의를 운영하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 회장과 협의 후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0조(역할)**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, 사회복지 정책발굴 및 건의, 시군 사회복지 정책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지원, 전문위원회 간 조정 및 연계·협력을 위해 노력하며, 조례 제2조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건의한다.
1. 사회복지위원회 심의(건의)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
  2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전반 사항
  3. 사회복지 제 분야에 대한 의제 개발 및 건의

4. 시·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  5.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 6. 시·군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
  7.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  8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회장이 부의한 사항
- ② 산하 기구는 사회보장 현안 논의 및 정책발굴,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, 시군과의 사회보장 정책 연계,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한다.
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
  2. 사회보장 제 분야에 대한 현안논의 및 의제 발굴
  3. 복지욕구가 필요한 서비스 수요자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 4. 복지욕구와 서비스 공급자간 복지연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  5. 시·군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6. 실무위원회 회장이 산하 기구에 필요하다고 검토를 요구한 사항
  7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산하 기구 회장이 부의한 사항

**[별첨 1]**

**경기복지거버넌스**  
< 제 \_\_\_차 \_\_\_\_\_ 회의 >

○ 일 시: 20\_\_ . \_\_ . \_\_ ( ) : \_\_  
○ 장 소:  
○ 위임자

성명	소속

위 임 장
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제 ___ 차 _____ 회의 성원권 및 의결권을 _____ 위원에게 위임합니다.  20__ . __ . __  성명: (인)  <b>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</b>

**제11조(공청회 등 개최)**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회장은 회의 운영 활성화 및 제10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건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세미나,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임장)** 실무위원회는 위임장을 통해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위임장은 해당 위원이 별첨1.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서명, 날인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.

**제13조(소위원회)** ① 실무위원회 및 산하 기구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소위원회는 각 회의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경우 우선 처리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회의 수당)** 「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제외한다.

**제4장 전담 기구**

**제15조(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)** 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, 조례 제11조 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  
②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**제5장 보 칙**

**제16조(위임)**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집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도지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3. 경기도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각 분야별 정책비전

영역	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비전	
	정책목표	전략
총괄 (삶의질 및 지역인프라)	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·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,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회	①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②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③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
아동돌봄	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·개선을 통한 아동-가족친화적 지역 사회의 조성	① 육아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②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(이용가능성, 이용편의성, 욕구적합성) 제고 ③ 돌봄 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④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
성인돌봄	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	① 장애인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③ 질병,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
보호안전	누구나 학대(방임, 폭력)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으며,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	①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②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③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
건강	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과 예방중심의 포괄적·통합적인 건강증진이 가능한 사회	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② 예방적 건강 관리 ③ 의료 접근성 제고
교육	소득이나 가정환경,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	①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②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성취도 향상 ③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④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
고용	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,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	①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②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③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
주거	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,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	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② 주거비 부담 경감 ③ 주거의 안정성 향상
문화여가	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, 최소한의 문화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기회를 보장받는 사회	① 생활체감형 문화·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②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
환경	누구도 신체적,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,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 지역 간, 계층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	① 건강하고 안심 할 수 있는 환경 관리 ②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

- 출처 :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내(보건복지부) <참고: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>



슬기로운  
경기복지거버넌스  
생활 안내



경기복지재단  
GYEONGGI WELFARE FOUNDATION

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복지재단(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)에서 지원합니다.  
[facebook.com/GGwelfaregovernance](https://facebook.com/GGwelfaregovernance)